

## [변경대비표]

1. 펀드명 : 타임폴리오위드타임증권자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
2. 작성기준일 : 2024.08.01
3. 정정사유 :
  -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
  -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(2024.03.01 시행)
  -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(최근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→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(97.5% Var모형사용))
  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(2024.01.25 시행)
  - 자본시장법 제92조 개정사항 반영(2021.10.21 시행)
  -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개정사항 반영
  -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<별지 제15호> 개정. (2024.08.01 시행)
4. 효력발생일 : 2024.08.20

### <신탁계약서>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오기정정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<별지 제 15 호> 개정. (2024.08.01 시행)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각 호와 같다. 구분- <u>선취</u> 판매수수료 부과여부  8. 종류 S: <u>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(후취판매수수료 부과)</u>  13.종류 S-P: <u>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중 연금지축계좌의 가입자</u>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각 호와 같다. 구분- <u>&lt;삭제&gt;</u> 판매수수료 부과여부  8. 종류 S: <u>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에 가입한 자</u>  13. 종류 S-P: <u>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에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</u>
집합투자업자 주소지 변경		집합투자업자 :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4	집합투자업자 :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

<일괄신고서>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<투자결정시 유의 사항 안내>	<p>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4.01.25)</p> <p>문구보완</p>	<p>6. 집합투자증권은 ---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아니하며, 특히 「예금자보호법」의 적용을 받는 ---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하지</u> 않습니다.</p> <p>11. 집합투자업자는 &lt;추가&gt; 최초설정일 이후 6 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 억원 <u>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</u> 집합투자업자가 --- 있습니다.</p>	<p>6. 집합투자증권은 ---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&lt;삭제&gt; <u>보호되지</u> 아니하며, 특히 「예금자보호법」의 적용을 받는 ---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&lt;삭제&gt;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.</p> <p>11. 집합투자업자는 <u>이 투자신탁의 모두자신탁이</u> 최초설정일 이후 6 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 억원을 <u>초과하지 못</u>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<u>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 의 없이</u> 집합투자업자가 --- 있습니다.</p>
요약정보			
투자 위험 등급	<p>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(최근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 →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(97.5% Var 모 형사용))</p> <p>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4.01.25)</p>	<p>(주)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---분류하였습니다. <u>이 집합투자기구의</u>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 년간 수익률 변동성(연환산 표준편차)은 <u>10.3%로서</u> 위험등급 6 등급 중 3 등급(다소 높은 위험)에 해당합니다.</p> <p>다만, <u>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 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해야 하는 대상이나</u>, 주로 일반사모 집합투자기구--- 유지합니다.</p> <p>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이며, --- 주시기 바랍니다.</p>	<p>(주)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---분류하였습니다. <u>이 집합투자기구는 설정 후 3 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로</u>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 년간 수익률 변동성(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 액, 97.5% VaR 모형 사용)은 20.54%로 위험 등급 6 등급 중 3 등급(다소 높은 위험)에 해당합니다.</p> <p>다만, <u>이 집합투자기구는 &lt;삭제&gt;</u>, 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--- 유지합니다.</p> <p>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&lt;삭제&gt;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--- 주시기 바랍니다.</p>
투자비용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투자실적추이 (연평균수익률)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투자자 유의사항	<p>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4.01.25)</p>	<p>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---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<p>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&lt;삭제&gt;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---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운용전문인력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주요투자위험 - 원본손실위험	<p>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4.01.25)</p>	<p>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투자신탁의 ---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아니하며, 특히 ---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</p>	<p>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투자신탁의 ---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&lt;삭제&gt; <u>보호되지</u> 아니하며, 특히 ---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&lt;삭제&gt;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.</p>
집합투자기구의 종류 - 판매경로	<p>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&lt;별지 제 15 호&gt; 개정. (2024.08.01 시행)</p>	<p>온라인 슈퍼(S)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</u>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--- 제공되지 않습니다.</p>	<p>온라인 슈퍼(S) <u>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</u>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--- 제공되지 않습니다.</p>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
4. 집합투자업자 가. 회사의 개요	주소지변경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4, 19층 (우 07325)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, 16층 (우 07321)						
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운용전문인력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					
6.집합투자기구의 구조	금융투자회사 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 칙 <별지 제 15 호> 개정. (2024.08.01 시행)	<p>[종류형 구조] - 판매경로: 온라인 슈퍼(S) <b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</b>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--- 제공되지 않습니다.</p> <p>- 가입자격 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형(S) <b>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</b> (후취판매수수료 부과)</p> 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형(S-P) <b>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중 연금지축계좌의 가입자</b></p>	<p>[종류형 구조] - 판매경로: 온라인 슈퍼(S) <b>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</b>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--- 제공되지 않습니다.</p> <p>- 가입자격 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형(S) <b>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에 가입한 자</b> (후취판매수수료 부과)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형(S-P) <b>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에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</b></p>						
10.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 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 항 반영 (2024.01.25)	이 투자신탁은 ---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, 이 투자신탁은 ---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<b>예금보험공사</b>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.	이 투자신탁은 ---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, 이 투자신탁은 ---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<b>예금자보호법</b>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.						
10.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위험 가. 일반위험	문구보완	소규모펀드의 타펀드 자동전환 위험  집합투자업자는 <추가>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 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<b>수익자총회 없이</b> 집합투자업자가 --- 바랍니다.	소규모펀드의 타펀드 자동전환 위험  집합투자업자는 <b>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</b>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 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<b>그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</b> 집합투자업자가 --- 바랍니다.						
10.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 기구에 적합한 투 자자 유형	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 경(최근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 익률의 표준 편차 → 일간 수익률의 최 대손실예상액 (97.5% Var 모 형사용))	<p>(주)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<b>위험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.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위험등급 6등급 중 1 등급에 해당합니다.</b></p> <p>이 집합투자기구의 &lt;추가&gt;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(<b>연환산 표준편차</b>)은 <b>10.3%</b>로서 위험등급 6 등급 중 3 등급(다소 높은 위험)에 해당합니다.</p> <p>다만, <b>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해야 하는 대상이나, 주로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--- 유지합니다.</b>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(주)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<b>위험등급 6 등급 중 1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</b></p> <p>이 집합투자기구는 <b>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로</b>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(<b>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, 97.5% VaR 모형 사용</b>)은 <b>20.54%</b>로 위험등급 6 등급 중 3 등급(다소 높은 위험)에 해당합니다.</p> <p>다만, <b>이 집합투자기구는&lt;삭제&gt;, 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--- 유지합니다.</b></p> <p>(2) 투자위험등급 변경 내역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02 2022 1497 2101"> <thead> <tr> <th>변경일</th> <th>위험 등급</th> <th>변경사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변경일	위험 등급	변경사유			
변경일	위험 등급	변경사유							

			<table border="1"> <tr> <td>2023. 07.26</td> <td>1등급</td> <td>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산정기준 변경</td> </tr> <tr> <td>2024. 08.20</td> <td>1등급</td> <td>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→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기준)</td> </tr> </table>	2023. 07.26	1등급	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산정기준 변경	2024. 08.20	1등급	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→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기준)
2023. 07.26	1등급	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산정기준 변경							
2024. 08.20	1등급	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→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기준)							
		<p>&lt;변경 전 1&gt; ■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</p>	<p>&lt;변경 후 1&gt; (3) 수익률 변동성 기준 (설정 후 3년이 경과한 경우)</p>						
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 가. 매입	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<별지 제 15 호> 개정. (2024.08.01 시행)	<p>(2) 가입자격 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형(S) <u>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</u>(후취판매수수료 부과)</p> 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형(S-P) <u>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중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</u></p>	<p>(2) 가입자격 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형(S) <u>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에 가입한 자</u>(후취판매수수료 부과)</p> 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형(S-P) <u>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에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</u></p>						
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 나. 환매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(2024.03.01 시행)	<신설>	<p>(10)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중도환매 불가</th> <th>중도환매시 비용 발생</th> <th>중도환매 허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-</td> <td>0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환매수수료 관련 세부사항은 '제 2 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'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	중도환매 불가	중도환매시 비용 발생	중도환매 허용	-	0	-
중도환매 불가	중도환매시 비용 발생	중도환매 허용							
-	0	-					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	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<별지 제 15 호> 개정. (2024.08.01 시행)	<p>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형(S) <u>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</u> (후취판매수수료 부과)</p> 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형(S-P) <u>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중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</u></p>	<p>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형(S) <u>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에 가입한 자</u> (후취판매수수료 부과)</p> 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형(S-P) <u>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에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</u></p>				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					
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9 호 개정	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- 연금소득 분리과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3. 1 호 및 2 호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<u>1,200</u> 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단, 연간 <u>1,200</u> 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가능 <b>(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)</b>	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- 연금소득 분리과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3. 1 호 및 2 호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<u>1,500</u> 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단, 연간 <u>1,500</u> 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가능 <b>(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)</b>
[제 2 부 별첨 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1.타임폴리오워드 타임증권모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 접형) 나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(3)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2.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3.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	주소지변경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 길 24, 19 층 (우 07325)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, 16 층 (우 07321)
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	자본시장법 제 92 조 개정 사항 반영 (2021.10.21 시행)	2)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<b>&lt;추가&gt;</b>	2)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<b>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 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</b>

<변경전 1> ■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

위험등급	분류기준	표준편차
1	매우 높은 위험	25% 초과
2	높은 위험	15% 초과 25% 이하
3	다소 높은 위험	10% 초과 15% 이하
4	보통 위험	5% 초과 10% 이하
5	낮은 위험	0.5% 초과 5% 이하
6	매우 낮은 위험	0.5% 이하

1. “수익률 변동성 기준”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 이 위험등급은 매 결산 시마다 재산정하며,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<변경후 1> (3) 수익률 변동성 기준 (설정 후 3년이 경과한 경우)

위험등급	분류기준	97.5% VaR
1	매우 높은 위험	50% 초과
2	높은 위험	50% 이하
3	다소 높은 위험	30% 이하
4	보통 위험	20%이하
5	낮은 위험	10% 이하
6	매우 낮은 위험	1% 이하

1) “수익률 변동성 기준”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 이 위험등급은 매 결산 시 마다 재산정하며,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2) “97.5% VaR”는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.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( $\sqrt{250}$ )를 곱해 산출하며, VaR(Value at Risk)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. 상기 표상 VaR값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(신뢰구간 97.5%)을 의미합니다.